

“ 자원순환형 사회를 선도하는 ”



한국건설자원협회

수신자 각 지회장 및 대표이사

(경유)

참 조

제 목 「건설폐기물법 시행령」 일부개정령 공포 알림



1. 지난 '23.9.14일 개정된 「건설폐기물법」(법률 제19718호, 시행일 '24.3.15)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건설폐기물 배출자 및 처리업자의 행정처분 등 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공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

- ※ 위반사실 공표 대상(「건설폐기물법」제56조의3)
- 제2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26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
 -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에 따른 징역형 또는 벌금형
 - 제6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

2.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공표사항과 절차 등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'23. 11.25일 입법예고 되었던 「건설폐기물법 시행령」 일부개정령이 공포(대통령령 제34293호, 시행일 : '24.3.15)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요 개정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□ 주요 개정사항

구분	주요 내용
구체적 공표 항목 (제27조의2제1항)	▶ ①사업자의 종류, ②명칭·소재지·대표자 성명, ③구체적 위반행위, ④처분내용(영업정지, 과징금, 과태료 등)·처분일
공표 대상 결정 절차 (제27조의2제2항)	▶ 위반사실에 대한 공표 여부는 「환경정책기본법」에 따른 환경정책위원회에서 심의 후 결정 ※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고시
공표 방식 및 기간 (제27조의2제3항)	▶ 환경부 및 지방자치단체 누리집(홈페이지)에 1년간 공개

끝.

한국건설자원협회 회장



담당 팀장 권병문 부장 강한서 사무총장 조정환 회장 박하준

협조자

시 행 정책기획 - 148호 (2024.3.5) 접수

우 06752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외로27길 2(일동제약빌딩 3층) / www.koras.org

전화 02-3476-7787 전송 02-3476-8464 /hmhihi@koras.org / 공개